##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72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이성권・이헌승・박수영

조승환 · 김도읍 · 최은석

곽규택 · 정성국 · 정연욱

권영진 · 김용태 · 주진우

서지영 • 배준영 • 신성범

강명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 · 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 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제63조의7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
치) ① ~ ⑤ (생 략)	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u>⑥</u> 제5항에 따른 합격·승진·
	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
	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
	력이 발생한다.
<u>⑥</u>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